

##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5. 5. 16. A 종합건설사(이하 "A회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 배관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하청업체(이하 "B회사") 소속 재해자가, 흙막이 지보공이 철거된 상태에 있던 굴착장소에 놓고 온 공구(임팩드릴)를 가져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져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현장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판결, 이하 "대상판결").

울촌은 원청인 A회사로서는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를 통해 하청업체 B회사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을 뚫기 전에 되메움을 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였던 점, 그럼에도 재해자를 포함한 B회사 관계자들이 흙을 충분히 되메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재해자가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구를 가지러 간 시점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와 재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경합하여 발생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다하였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A회사 대표이사, 현장소장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I.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

#### 1. 사건의 경위 및 공소사실 요지

(1) 재해자를 포함한 B회사 소속 작업자들은 충분한 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해체하고, 다음 공사 구간으로 해당 흙막이 지보공을 이동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실수로 굴착 장소에 공구를 놓고 왔는데 흙이 충분히 되메워지지 않은 상태였던 2.5미터 깊이의 굴착 장소에 들어가 위 공구를 챙기다가, 주변 토사와 토석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매몰되는 바람에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검사는 재해자 소속 B회사의 현장소장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 Related Areas

중대재해 센터

부동산 건설

### Contact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송민경 변호사

02-528-5797

mksong@yulchon.com

김현근 변호사

02-528-6407

hyunkeunkim@yulchon.com

김진휘 변호사

02-528-5631

jinhwikim@yulchon.com

정인태 변호사

02-528-5738

itjeong@yulchon.com

황준섭 전문위원

02-528-5888

jschwang@yulchon.com

해제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통해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2), ②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시방서(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③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위 규칙 제340조 제1항)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청 A회사의 현장소장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관하여, 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같은 조 제5호 나목)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2. 대상판결의 요지

###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원청 현장소장 무죄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구분되어야 하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를 전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대상판결은, ① 원청인 A회사가 B회사에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회사의 근로자인 작업반장, 재해자 등이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B회사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자인 '사업주'는 B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A회사 현장소장이 ②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③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문서 등에 토사가 무너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재해자를 포함한 B회사의 근로자들은 되메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였고, 굴착 장소에 들어가는 등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위 점들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B회사 작업반장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원청인 A회사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전 회의에서 “굴착 깊이에 따른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시 작업 순서 준수”에 관한 발언을 하였던 점 등에서, A회사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의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A회사 현장소장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 원청 대표이사 무죄

대상판결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와 관련하여(시행령 제4조 제3호), A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았던 점을 들어, 위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점검 여부와 관련하여(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위 규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고는 B회사 작업반장 등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A회사 현장소장이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의 이 부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A회사 대표이사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II.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올초는 앞서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내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데, 이번 대상판결에서도 재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체 무죄 판결로는 다섯 번째인데, 50억 원 미만 공사에 관한 적용유예 관련 형식적 측면의 무죄 판결 2건을 제외하면 세 번째 판결입니다.

이번 대상판결이 이전 무죄 판결과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원청과 하청의 형사책임을 분리하여 원청의 형사책임은 부정되고, 하청의 형사책임만 인정되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 동안의 판결에서는 원청과 하청에게 함께 책임이 인정되든지, 아니면 함께 책임이 부정되었던 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하청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원청의 입장에서 사고에 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부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간 산업재해 사고에 관해서는 우리 형사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관계자들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들을 일괄하여 형사처벌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법 제63조)와 사업주

의 안전조치(법 제38조) 규정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도급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았고, 이러한 논란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조치와 동일한 내용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울촌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A회사가 하청 B회사 관계자들에게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충실히 교육하고, B회사 작업반장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A회사로서는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다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로서는, 재해자가 공정과 상관없이 사고 장소에 들어가거나, B회사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또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를 사실상 동일시하여 수급인이 처벌되면 도급인도 당연히 처벌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부분도 의미가 큼니다.

이번 대상 판결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충실히 준비한다면 설령 예견하지 못했던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히려 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더욱 노력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